2017년 리스크 예상사업 특별감사
교 육 일 지

담 당	부 장	팀 장	단 장
유상범	김진권		

부서명 : 장비관리단

교육구분	특별교육	교육일시	2018-10-15(월) 13:30~14:30	
교육인원	구분		계	전파교육자 명단
	교육대상 인원수		31	교육제외 : 휴직1, 공상1 전파교육 : 한승호
	교육실시 인원수		29	

교육내용

☐ **2017년 리스크 예상사업 특별감사 등 2건 조사결과 통보 및 조치 요청 (기술계획처-22719,2018.09.19.)**

○ **제목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처리에 관한 사항**

1. 적출내용

서울교통공사로 출범한 17년 6월부터 12월 현재까지 관련공사 및 용역을 시행하면서 계약 후 착공계를 접수하고 이를 전자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의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1항의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를 명기하여 처리할 수 없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조(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상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이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해당 기간에 시행한 공사 중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착공계를 접수하고 이를 전자문서화 하여 관련부서에 송부하면서 **착공계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뒷번호 7자리를 색인 처리하는 등의 보호조치 없이 처리**하였다.

2. 조치사항

공사 시행시 관련문서에 포함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보호조치 없이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의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교육실시자 및 장소	성 명	직 명	교육장소	비 고
	김귀중	단장	회의실	※ 미 참석자 전파교육

교육 참석자 명단

No	직명	성명	서명	No	직명	성명	서명	No	직명	성명	서명
1	단장	김귀중		9	과장	송병길		17	대리	유상범	
2	1팀장	한정식		10	과장	송충석		18	사원	김상준	
3	부장	정귀임		11	과장	이희영		19	사원	한승호	연차 10/16 완성
4	부장	이우정		12	과장	김홍식		20	차장	최환영	휴직
5	부장	김광은		13	과장	최혁진		21	사원	김준민	
6	부장	김진철		14	과장	김동혁		22	사원	박기범	공상
7	차장	이학연		15	과장	김대호					
8	차장	김용욱		16	과장	신재권					
No	직명	성명	서명	No	직명	성명	서명	No	직명	성명	서명
1	2팀장	박기성		4	차장	송정석		7	과장	김연아	
2	부장	주종경		5	차장	최봉식		8	사원	채호용	
3	부장	안원규		6	과장	김기란		9	사원	이재복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리스크 예상사업 특별감사 등 2건 조사결과 통보 및 조치 요청

1. 관련근거

가. 2017년 리스크 예상사업 특별감사 결과 통보[기술감사처-21455호('18.09.14)]

나. 고가교 방음벽 교체공사 특별조사 결과 통보[기술감사처-21503호('18.09.17)]

2. 위 와 관련하여 특별감사(조사) 결과를 통보하오니 붙임1,2의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기한내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는 조치계획)를 '18. 11. 05(월)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결과(계획) 작성

1) 단일 지적 건 : 해당부서 작성

2) 동일 사항에 대한 부서 중복 지적 건 : 처분요구서의 적출내용과 조치사항을 참고하여 부서간 협의 후 1건으로 작성하되 지적내용에 따라 1건으로 작성이 곤란한 경우는 부서별 작성(1건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관련부서 협조 결재 시행)

나. 제출방법

1) 기술사업소 : 조치결과(조치계획 포함) 작성 후 본사 직종별 주무부서로 제출

2) 본사 주무부서, 3단 : 본부장 내부결재 후 기술계획처 송부

- 파일 첨부시 조치결과(계획) 문서와 증빙서류는 연결하여 1개 파일로 첨부
- 파일명(예시) : **처분(일련)번호 17-01(증빙서류 포함)**

3. 조치결과(계획) 등록 : 조치결과(계획)의 공문 송부와 별도로 해당 처, 단에서 메트로넷 통합감사 시스템에 등록(붙임3 참조).

붙임 : 1. 2017년 리스크 예상사업 특별감사 조사결과 통보. 1식.

2. 고가교 방음벽 교체공사 특별조사 결과 통보. 1식

3. 통합감사 시스템 등록방법 1부. 끝.

기술계획처장 만 차

수신자 전기처장, 정보통신처장, 궤도처장, 신호처장, 기계처장, 전자처장, 토목처장, 건축처장, 승강장안전문관리단장, 승강기관리단장, 장비관리단장, 전기1사업소장, 전기2사업소장, 정보통신1사업소장, 정보통신2사업소장, 궤도1사업소장, 신호1사업소장, 신호2사업소장, 기계1사업소장, 기계2사업소장, 전자1사업소장, 전자2사업소장, 토목1사업소장, 토목2사업소장, 건축1사업소장, 건축2사업소장

부장 서영수 처장 09/19 김만화

협조자

시행 기술계획처-22719 (2018.09.19.) 접수 장비관리단-23811 (2018.09.21.)

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78길 15-48(용답동) / www.seoulmetro.co.kr

전화 6311-9702 /전송 6311-4277 / youngsoo28@seoulmetro.co.kr / 대시민공개

부패 '0'의 공기업!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인사 이권청탁 배격

처 분 요 구 서

일련번호	17-08				
기관명 (부서명)	시행일	처 분 요 구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조치방법	조치금액	
전기2, 통신2, 신호1, 기계2, 토목2, 장비단	2018. 09.	통보	-	-	

제 목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처리에 관한 사항

1. 적출내용

전기2사업소, 정보통신2사업소, 신호1사업소, 기계2사업소, 토목2사업소, 장비관리단 에서는 서울교통공사로 출범한 17년 6월부터 12월 현재까지 관련공사 및 용역을 시행하면서 계약 후 착공계를 접수하고 이를 전자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1항의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를 명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의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한 서울교통공사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조(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상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이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본 문서의 불법유출 시, 관계법과 규정에 의해 처벌됩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해당 기간에 시행한 공사 중 기계2사업소 13건, 전기2사업소 8건, 정보통신2사업소 7건, 토목사업소 7건, 장비관리단 2건, 신호1사업소 1건의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착공계를 접수하고 이를 전자문서화 하여 관련부서에 송부하면서 착공계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뒷번호 7자리를 색인처리하는 등의 보호조치 없이 처리하였다.

그 결과 개인의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전자문서에 보호조치 없이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조치사항

기술본부(전기2사업소, 정보통신2사업소, 신호1사업소, 기계2사업소, 토목2사업소, 장비관리단) 에서는

공사 시행시 관련문서에 포함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보호조치 없이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본 문서의 불법유출 시, 관계법과 규정에 의해 처벌됩니다.